구성원 참여와 소통을 위한 도약위원회 규정(4-4-16)

규정신설: 2018.01.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견 제안을 장려하고, 대학 운영에 참여·소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규정의 구성원은 본 대학 교원, 직원, 학생으로 한다.

- 제3조(구성 및 기능) ① 도약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성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상생위원회(의견수렴)와 발전위원회(실천계획)로 구성한다.
 - ② 각 위원회에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보직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- ③ 상생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협대표 2인, 노동조합대표 2인, 학생대표 2인, 학사운영처장, 학생처장, 창의인재처장, 산학협력단장 등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대학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(제도, 제안)에 관한 사항
 - 2. 학과, 행정부서 등 민원에 관한 사항
 - 3. 구성원간의 참여·소통을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 시행
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④ 발전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외협력부총장, 해당부서의 처장, 부처장,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/특성화 분과, 조직/제도 분과, 대외경쟁력 분과, 대외사업 분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상생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
 - 2. 실천결과 공개 및 환류
 - 3. 기타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
- 제4조(소집) ① 회의는 각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 - ② 상생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단위별 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.
 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**제5조(결과보고)**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해당 구성원들에게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해 10일 이내에 결과를 공개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